

울산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나11193 판결 [계약금 반환 등 청구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나11193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0. 2. 12 선고 2019가단113153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

담당변호사 이정민

피고, 피항소인C

변론 종결 2020. 11. 12.

판결 선고 2020. 12. 10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9가단11315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,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,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).

○ 제2쪽 아래에서 5줄의 "도수로공사"를 "도수로(저수지 등 수원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)공사"로, 같은 쪽 아래에서 3줄과 제6쪽 10줄의 "도로수공사"를 "도수로공사"로 각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형철

판사안복열

판사김현진